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14.

거창군수

① 사업개요

- (사업 대상)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 등급 확인은 www.mecar.or.kr(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콜센터 ☎ 1833-7435(환경공단)에서 확인 가능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 정의를 따름)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 (사업 예산) 602대정도(5등급 350대, 4등급 240대, 건설기계 12대), 1,492백만원
※ 차종(연식)에 따라 차등지원, 신청결과에 따라 지원대수 변동 가능
- (신청 기간) 2024. 2. 16.(금) ~ 3. 8.(금)
- (신청서 제출 방법) 인터넷, 등기우편(3. 8.(금). 소인분까지 인정), 방문접수

①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main.do>)

② 등기우편: 우)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4층 환경과 환경정책담당
※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된 건만 유효하며, 신청기간 내 소인분에 한해 인정

③ 방문접수: 읍·면사무소

④ 문의전화: 거창군 환경과 환경정책담당(055-940-3497, 3494)

※ 문의 전화량이 많아 통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공고내용 숙지 후 신청 바랍니다.

2 지원대상 : ①~⑤호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접수일 기준 거창군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 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 ③ 지자체의 장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 자동차(도로용 3종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 조기폐차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성능검사업체에서 검사받아서 제출
- ④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 자동차(도로용 3종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
- ⑤ 총중량 3.5톤이상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한 자만 가능

지방세 체납 등 완납하여야 조기폐차 가능하오니 신청하는 차주들은 반드시 숙지하고 접수 바람

3 신청 접수 방법 및 절차 등 상세

1. 신청서 접수 방법

인터넷	<p>○ 인터넷 신청방법 (시스템 관련 문의 032-590-5023, 5028)</p> <p>"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main.do)</p> <p>→ 로그인→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p> <p>→ 휴대폰 본인인증→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p> <p>→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저공해신청(완료)</p>
등기우편	<p>○ 등기우편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환경과 조기폐차 담당</p> <p>○ 구비서류 : ① 조기폐차 신청서[붙임1] ,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로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위임장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2]</p> <p>⑤ 해당자 : 저감장치장착불가확인서, 저소득층, 소상공인확인서</p> <p>⑥ 해당자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 등급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p> <p>○ 접수기간 내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p>
방문접수	<p>○ 방문 주소 : 읍·면 사무소</p> <p>○ 구비서류(아래 서류를 반드시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선명하게 첨부 송부)</p> <p>① 조기폐차 신청서[붙임1] ,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p> <p>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로인 경우 각각 신분증 위임장 제출</p> <p>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2]</p> <p>⑤ 해당자 : 저감장치부착불가확인서, 저소득층, 소상공인확인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 등급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p>

2. 지원 절차

- ① **조기폐차 신청**
 - (소유자) 우편, 방문접수, 온라인 접수 등을 통해 지자체로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붙임1)를 제출
- ↓
- ② **조기폐차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 2024. 4. 예정[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자체) 신청 접수된 서류를 확인(지급대상 여부, 가격산정 등)하여 지급대상 확인서를 소유자에게 발급(선정자에 한하여 개인별 우편 발송)
- ↓
- ③ **대상차량확인(성능검사) → ④ 대상차량 폐차·말소등록**
 - (소유자) 차량 소유자는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상차량확인(성능검사)을 받고 폐차 말소하여야 함(**확인 받지 않고 폐차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만 보조금 지급 청구 가능.
- ↓
- ⑤ **보조금 청구(보조금 포기 시 포기서 제출해야 함)**
 - (소유자) 폐차 말소 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붙임4)를 지자체에 제출(말소사실 증명서 사본, 소유자 통장사본, 성능검사확인서, 해당 서류 등)
 ※ 청구기한 : ②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다만, 신차 출고지연 등에 따라 청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지자체로 연장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함)
- ↓
- ⑥ **보조금 지급**
 - (지자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서류 검토 후 제출된 자동차 소유자 계좌로 보조금을 입금(보조금 지급은 청구서 제출일로부터 약 1달 정도 소요됨)
- ↓
- ⑦ **추가 구매 보조금 신청**
 - (소유자) 구매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하고('23.11.1. 이후 등록 인정)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급 청구서(붙임5)를 지급대상확인서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자체에 제출
- ↓
- ⑧ **추가 구매 보조금 지급**
 - (지자체) ⑥과 동일



4 선정순위[선착순 선정이 아니며 접수기간 중 일괄접수 후 대상자 선정]

- 1순위 : 택배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총중량 3.5톤이상 차량
- 2순위 :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 3순위 :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5등급 해당)
- 4순위 : 저소득층 소유차량, 소상공인 소유차량, 무공해차 구매 차량

5 지원금액

○ (조기폐차 기본 지원)

구분	총중량 3.5톤 미만		총중량 3.5톤 이상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5인승 이하)	그 외 자동차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지원율	차량기준가액의 50%	차량기준가액의 70%	

-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해당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하며 신청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를 제출(복지로 또는 지자체 발급)
 - ※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모두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경우만 인정 가능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으로 한정
- ◎ 소상공인 해당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 ※ 공동명의인 경우 1인만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 ◆ 저소득층(생계형)과 소상공인 해당차량은 중복 지원 불가
-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5등급 중 총중량 3.5톤 미만)은 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 ◎ 4·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무공해차 신규 등록 시 50만원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 (조기폐차 추가 구매 지원)

구분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 5인승 이하 추가 구매 지원		50만원 추가지원 (무공해차 구매시)
	신차	중고차	
지원율	차량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	차량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	

구분	총중량 3.5톤 미만 그 외 차량 추가 구매 지원		50만원 추가지원 (무공해차 구매시)
	신차	중고차	
지원율	차량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	차량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	

구분	총중량 3.5톤 이상 추가 구매 지원		지게차, 굴착기는 50만원 추가지원 (무공해차 구매시)
	신차	중고차	
지원율	차량기준가액의 200% 추가 지원	차량기준가액의 100% 추가 지원	

※ 지게차, 굴착기는 신차(200%)만 지원 가능(중고차 지원 불가)

- ex1)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폐차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ex2)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ex3)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 만족시)
ex4)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 폐차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 만족시)

- ex1)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 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불가)
ex2) 지게차 폐기 → 굴착기 구매(추가지원 불가), 굴착기 폐기 → 지게차 구매(추가지원 불가)

< 추가 구매 지원 조건 상세 >

구분	신차 및 중고차 지원기준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자동차 (5인승 이하)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3.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그 외 자동차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3.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	배출가스 1·2등급을 신규로 등록 (경유차 외) ▶ 신차* 구매시('23.11.1이후' 신규 등록) →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중고* 구매시('23.11.1이후' 신규 등록, 상품용**은 제외) →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Euro6 이상 경유차를 신규로 등록 ▶ Euro6 이상 차량(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차량)을 '23.11.1.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할 경우(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중고는 100%)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단,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은 규격**)이 10% 범위 이내 일부 증가한 경우 인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

구분		신차 및 중고차 지원기준
		<p>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p> <p>**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p> <p>※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금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p> <p>※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제원 단위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10% 범위 일부 증가) 인정</p> <p>※ 신규로 구매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동일한 원동기 형식의 배기량 환산값 등이 확인되는 경우 폐차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배기량 보다 작거나 10% 범위 이내 증가 인정 ⇒ 환산값 확인 방법 : 환경부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정책 <기후대기>[DPF 부착가능차량(2006.02.01.)첨부자료]</p>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	전동화 등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 등록	<p>▶ 전동화 등 무공해 건설기계를 신규 등록('23.11.1이후 신규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하는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p>
	非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로 등록	<p>▶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 라목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23.11.1이후 신규 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할 경우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10% 범위 이내의 규격* 또는 정격출력 증가 인정)경우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p> <p>*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p>

※ 단,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중고차를 구매하여 신규로 등록한 소유자는 신차·중고차 구매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추가(구매) 보조금 신청 가능(차량 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로 확인)

⑥ 참고 사항

<관내 성능검사 업체>

업체	소재지	전화번호
남한정비	거창읍 밤티재로 1262	055-943-7700
신한정비	거창읍 밤티재로 1310	055-944-9696

<관내 폐차장 업체>

업체	소재지	전화번호
거창폐차장	거창읍 밤티재로 1268	055-942-7705

※ 타 지역 성능검사 및 폐차장도 인정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	추가 지원	
45등급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300	8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 (신차) 100% (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2,400			
		7,500cc 초과	3,000	7,8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00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 (신차)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7 기타 유의 사항

-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4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 **보조금 포기 시 포기서 반드시 제출해야 함(붙임7)**
- ◎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 시 보조금 지급 제외됨**
- ◎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까지 사용본거지가 변경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 대상차량확인을 받지 않거나, 말소일 이전에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로 추가 보조금을 지급받는 차량 소유자는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보조금 회수 조치
※ 신차 또는 중고차 추가 구매는 동일 차량에 1회만 지원(중복 지원 불가)
- ◎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함
-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전 타 시도 진출 및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원 불가
- ◎ 소유자 통장(계좌)으로 입금이 가능하며, 자유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제출하여야 함
- ◎ 폐차되는 차량과 추가 구매 지원 차량의 명의자는 동일하여야 함
- ◎ 보조금 청구기간 만료 후 추가 구매 보조금 지원 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평차(대상자 선정 전 폐차)가 가능하나, 선평차 시 차량 상태 확인 및 말소등록증 제출을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 추가 구매 보조금 청구서 제출시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 익년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음

- 붙임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1부.
 4.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1부.
 5. 조기폐차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서 1부.
 6. 위임장 1부.
 7. 포기서 1부.
 8. 인터넷 신청 및 차량 등급 조회 방법 1부.(따로붙임) 끝.

[붙임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소유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 법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 필수 기재(지급대상확인서 전자고지 발급시 필요) <input type="checkbox"/> 성명 : <input type="checkbox"/> 생년월일 :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휴대전화 :			
	③주 소			
	④휴대전화(차주 본인)			
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⑤차량번호			
	⑥차명(건설기계명)		⑦용 도	
	⑧사용 연료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input type="checkbox"/> 자동차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납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조기폐차 후 신차 구매여부	<input type="checkbox"/> 구입(여) <input type="checkbox"/> 미구입(부)(경유 차량 제외)			
※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반드시 체크 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별지2호)까지 사용본거지 또는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2024년 월 일				
거창군수 귀하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수수료
	개인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사본 1부.	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	없 음
	법인	1.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해당자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 1부. 2. 배출허용기준 증빙 서류 1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3. 차량 사양 증빙서류(제작사 또는 보험회사)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 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8조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교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성명)

(서명, 날인)

거창군수 귀하

[붙임5]

접수	환경과 - (. . .)
----	--------------------

확인번호	차량 구매(추가)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 소				
	폐차 자동차번호			휴대번호	
신규 (중고차 포함) 구매 차량 정보	신규 자동차번호				
	차 명				
	자동차제원	<input type="checkbox"/> 연 식()년		<input type="checkbox"/> 총중량()톤	
		<input type="checkbox"/> 적재중량()톤		<input type="checkbox"/> 배기량()CC	
		<input type="checkbox"/> 도로용 건설기계 3종 규격()			
	등록일자	년 월 일			
	제작일자	년 월 일		사용연료	
추가 보조금 신청금액	<input type="checkbox"/> 신차	<input type="checkbox"/> 중고차	원		
<p>위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신차구매 내역에 대해 확인하고(추후 번복 불가)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첨부 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p> <p>※ 3.5톤 이상의 경우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단, 10%범위 이내 일부 증가 인정)</p> <p style="text-align: right;">2024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 : (서명 또는 인)</p> <p>거창군수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p>					
<p>※ 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규구매 자동차등록증(건설기계인 경우 신규구매 건설기계등록증) 2. 자동차 소유자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붙임6]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위 임 자 (위임을 하는 자)	주 소	
	성 명	(인)인감도장
	주민등록번호	

상기 위임자 _____ 는(은) 수임자 _____ 에게
차량번호 _____ 호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차량구매보조금 지급청구) 서류작성 및 신청, 보조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024년 월 일

위 임 자 :

(인)
인감도장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첨부시 서명

- 1) 차량소유자 명의 계좌로 보조금을 청구하고 서류제출만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 작성 불필요
- 2) 공동소유 차량은 대표자를 지정하여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고 위임장을 작성 제출
- 3) 조기폐차 대상차량이 공동소유 차량이고 조기폐차 및 차량구매 보조금 둘다 지원할 시 조기폐차시 제출한 위임장으로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완료시까지 활용

거창군수 귀하

[붙임기]

포 기 서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신청인 성 명 :
- 신청인 주 소 :
- 신청 차량번호 :

상기 신청인은 거창군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신청하였으나 개인사유로 포기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